

세무회계저널
제17권 제5호 2016년 10월 pp.245~266
한국세무학회

조세회피와 감사시간에 대한 연구*

심충진** · 정재연***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유가증권 공시규정에 의해 공시된 세무조사 대상 기업의 조세회피와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세무조사 결과 추정되는 세액의 크기가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데 있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한다. 먼저 조세회피와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조세회피(TA)를 독립변수로 하고, 감사시간(InAH)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해 대응표본을 설정하였으며, 표본기업과 비교하기 위한 통제기업은 산업분류 내에서 자산총계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2배수를 원칙으로 선정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관심변수인 조세회피(TA)의 회귀계수는 10%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세회피기업(세무조사 선정 대상 연도)에 투입하는 감사시간이 대응표본(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은 기업)에 투입하는 감사시간보다 적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조세회피기업(세무조사 선정 대상 연도)과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은 기업 간의 감사투입시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세무조사 결과 추정되는 세액의 크기가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추정세액의 크기 또는 추정세액의 비율(ATE)를 독립변수로 하고, 감사시간(InAH)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관심변수인 추정세액의 크기, 추정세액의 비율(ATE)과 감사시간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기간을 추정세액이 공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검증하였기에 회사가 추정세액 공시시점에 감사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추정세액의 크기가 감사위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회사가 조세회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가 보수적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쳐 외부감사인이 보수주의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위험을 과소평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조세회피를 통한 세전이익의 하락이 보수주의 회계처리로 감사인에게 잘못 인식되어 감사투입시간이 과다하게 감소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조세회피, 세무조사, 추정세액, 감사투입시간

* 이 논문은 2015년도 건국대학교 KU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chjshim@konkuk.ac.kr, 주저자

*** 강원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jjjung@kangwon.ac.kr, 교신저자

I. 서론

세금납부와 관련된 일탈행위로서 ‘탈세(tax evasion)’와 그와 유사한 개념인 ‘조세회피(tax avoidance)’가 있다. 우리 세법상 탈세는 범죄이기 때문에 형벌로써 다스려지는 반면, 조세회피는 비록 법상 용어는 아니지만 그에 해당할 경우 보다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제재가 이루어진다(임동원·오윤 2013, 162).

기업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부담하게 되며, 이러한 기업의 조세부담은 직접적으로 현금의 유출을 가져온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자는 가능한 조세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의 현금유출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조세경감행위를 하게 된다(심충진 외 2013, 82). 다수의 선행연구들(김진희·정재욱 2006 외 다수)이 Desai와 Dharmapala(2006)가 제시한 조세회피 측정치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이 측정치가 우리나라의 조세환경에서 조세회피의 대용치로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세법 해석과 적용이 부인되어 세금이 추징되는 기업을 조세회피기업으로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독립적인 감사인이 감사업무에 감사시간이나 감사노력을 많이 투입할수록 우수한 감사품질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인식, 평가, 배분 등의 회계선택을 포함한 기업의 조세회피가 발생 가능한 상황에서, 독립적인 감사인이 감사노력을 많이 투입할수록 비정상적이거나 부적절한 조세회피 또는 법규의 미비점을 이용한 조세회피 등이 억제되고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박한순 2014, 81). 박한순 외(2013)는 조세회피를 보이는 기업에 대하여 감사노력을 많이 투입할수록 조세회피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한편 보수적인 회계처리가 경영자의 이익조정과 유사한 맥락이라면 기업의 법인세 조정에 회계처리의 보수성이 이용될 것이며, 법인세비용이나 법인세부담액의 크기와 보수성의 크기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다(김정옥·배길수 2006). 즉, 경영자는 조세회피를 할 경우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세법을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적용할 뿐만 아니라 보수적으로 회계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우용상(2009)의 연구에서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보수주의 회계처리성향이 높은 기업이 조세회피추정치가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익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보수주의 회계처리를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시도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낮은 기업의 경우에는 보수주의 회계처리와 조세회피 간에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수익성에 따라 보수주의 회계처리를 이용한 조세회피시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 견지에서는 세무보고 공격성과 같은 조세회피행위로 인한 정보위험이 재무보고의 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들 피 감사기업들에 대해서는 감사위험이 높다고 기대할 수 있고, 이런 경우 감사인의 실제 감사보수 결정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감사인이 인지하는 사

전적인 기대감사시간 및 실제 감사투입시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박종일·지승민 2016, 401). 이명곤 외 2인(2009)의 연구에서도 보수적 회계처리와 감사시간 간의 관계는 음(-)의 유의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부감사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익을 과대계상하는 분식회계의 위험에 대해 감사위험을 높게 생각하지만 이익을 과소계상한 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감사위험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감사투입시간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감사대상회사의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을 증가시킴으로써 감사인이 감사위험을 높게 평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감사인은 감사대상회사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인해 높게 평가된 감사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즉, 감사인은 추가적인 감사자원을 투입하여 감사절차를 강화하거나 입증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이로 인해 증대된 감사투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감사대상회사의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명곤 외 2012, 4). 이와 유사하게 감사인은 세무조사 결과 세액이 추정되는 기업의 감사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여 감사투입시간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이 현행 유가증권 공시 규정에 의해 자기자본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에는 2.5%) 이상 벌금이나 추징금이 부과될 경우 반드시 공시해야 되는 공시자료를 이용하여 세무조사 추정세액이 있는 기업의 실제 세무조사 대상 기간을 중심으로 외부감사인이 조세를 회피한 기업(세무조사 선정 대상 연도)과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은 기업 간에 감사시간의 투입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세무조사 후 추정세액이 있는 기업에 대해 추정세액의 크기가 감사인의 감사투입 시간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회귀분석 결과 조세회피기업(세무조사 대상 연도)에 투입하는 감사시간이 대응표본(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은 기업)에 투입하는 감사시간보다 적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음으로 세무조사 결과 추정되는 세액의 크기가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추정세액의 크기 또는 추정세액의 비율(ATE)를 독립변수로 하고, 감사시간($lnAH$)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관심변수인 추정세액의 크기, 추정세액의 비율(ATE)과 감사시간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Desai와 Dharmapala(2006)의 측정모형을 사용한 선행연구와 달리 유가증권 공시규정 제7조를 위반하여 공시하는 기업의 세무조사 대상 연도를 기준으로 조세회피를 한 기업과 대응표본(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검증하는 것이며, 세무조사 후 추정세액이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추정세액의 크기가 감사투입시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연구가설을 도출하고, 연구가설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을 제시한다.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제 V 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II. 선행연구

1. 조세회피에 대한 선행연구

김진희와 정재욱(2006)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재무적 특성과 조세회피행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기업의 조세회피행위의 측정은 Desai와 Dharmapala(2006)가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연구결과 기업의 자산이 증가할수록, 세전이이익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은 높았고, 기업의 부채가 증가할수록 조세회피성향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자산규모와 수익성 및 자본구조의 변화 등 재무적 특성이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현섭(2012)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세무조사 후 추정세액을 부과 받은 기업을 조세회피 기업으로 선정하여 조세회피 유무 및 조세회피행위의 크기와 재무-세무보고이익 차이(BTD)와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재무-세무보고이익 차이와 조세회피는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냈으며, 각 사업연도 소득액 중 일시적 차이를 이용하여 세무보고이익을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BTD는 조세회피행위의 크기와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esai and Dharmapala(2006)가 제시한 방법과 BTD를 조세회피행위의 크기로 측정한 방법은 그 검증력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BTD는 조세회피행위와 유의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어 BTD가 조세회피행위의 유용한 측정치가 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심충진 외 2인(2013)은 자본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이 경영자의 조세회피 행위를 판단하는데 있어 기업의 투명성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2001년부터 2012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세무조사 및 추정세액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세무조사 대상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기업의 조세회피는 비세무조사 기업의 조세회피보다 상대적으로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투명성이 낮은 기업의 조세회피는 기업 투명성이 높은 기업의 조세회피보다 상대적으로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세무조사 이후 세무조사 기업과 비세무조사 기업의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조사 이후 이해관계자들이 보다 기업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경영자 또한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투명성을 높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세무조사 기업의 추정세액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추정세액은 기업가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조사의 종결로 인하여 기업의 투명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이 추정세액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윤성과 기은선(2014)은 최고경영자 교체 및 교체유형이 기업의 조세회피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 중 최고경영자가 교체된 851개의 유가증권 및 코스닥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최고경영자 교체 및 교체유형과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최고경영자 교체 이전연도가 교체 이후연도에 비하여 조세회피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제로 교체된 최고경영자는 자발적으로 교체된 최고경영자에 비하여 교체 이전 연도에 보다 적극적으로 조세회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감사투입시간에 대한 선행연구

권수영과 기은선(2011)은 감사인이 발생액의 질(accruals quality)을 고려해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를 결정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회계감사에서 발생액의 질은 부정이나 오류의 발생가능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로 사용되고 있는 바, 유동발생액이 영업현금흐름으로 전환되는 비중이 낮고 그 편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감사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발생액의 질이 낮을 때 감사인은 목표 감사위험을 낮추기 위해 입증감사의 범위를 확대할 것이고 이는 감사투입시간 및 감사보수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증분석 결과 발생액의 질이 낮을수록 불확실성과 내재적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감사인은 보다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하게 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더 높은 감사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질적 발생액의 질(innate accruals quality)과 재량적 발생액의 질(discretionary accruals quality)이 모두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그 효과는 본질적 발생액의 질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질적 발생액이 정보위험이 큰 근본적인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감사인이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창섭 외 2인(2012)은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를 이용해 감사인이 경영자의 실제이익조정활동(real earnings management: REM)행위를 인지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전년도 실제이익조정이 클수록 당기의 감사투입시간 및 감사보수는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이 실제이익조정활동의 증가를 감사위험의 증가로 인식하고 감사투입시간 및 감사보수를 증대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감사인이 경영자의 실제이익조정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식한 후 증가된 감사위험을 낮추려는 노력을 수행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동훈과 최정운(2013)은 불성실공시지정이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불성실공시지정기업은 사유발생연도에 비지정기업에 비하여 비정상감사보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실제 불성실공시지정연도에 지정기업은 비지정기업에 비하여 비정상감사보

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본을 불성실공시지정기업으로 한정하여 지정 전후를 비교한 분석에서는 지정 이후의 기간에 비정상감사보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볼때 불성실공시지정은 감사인에게 감사위험으로 인식되어 해당 기간의 감사보수의 증가로 나타나지만 해당 감사보수의 증가가 비정상감사시간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최정운 외 2인(2014)은 감리지적을 받은 기업(감리지적기업)과 감리지적을 받지 않은 기업(감리비지적기업)의 감사시간과 감사보수 차이와 감리지적기업의 감리지적 전과 후의 체계적인차이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감리지적기업의 감리지적대상기업연도의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는 감리비지적기업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감리지적기업의 감리지적전후의 감사시간과 보수를 비교한 결과 감리지적 후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는 감리지적 전에 비해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예상대로 감리지적 이후 감사인이 감리지적기업을 감사위험이 높은 기업으로 인식하고 더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하며, 따라서 감사보수도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현걸과 정수진(2016)은 2014년에 개정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첨부되기 시작한 외부감사실시내용의 공시실태를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분반기 검토시간 공시자료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외부감사 실시내용에 구분 표시된 분반기 검토시간 관련 회귀분석 결과, 전체 감사시간 중 분반기 검토시간의 비중과 재량적 발생액 간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감사인이 분반기 검토과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경우 연도말 재무제표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증거이므로 분반기 검토시간 구분표시의 유용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3. 감사노력과 조세회피에 대한 선행연구

박미영(2012)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 특성과 조세회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감사보수 측정치 중 실제 감사보수는 조세회피와 유의적인 관련성이 없으나 비정상감사보수는 조세회피를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체계적 요인에 따른 비정상감사 보수가 높을수록 감사인과 해당 기업과의 경제적 유대관계가 증가해 감사품질의 저하로 조세회피 행위를 적절히 억제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감사인교체도 조세회피와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교체기업인 경우 감사보수할인이나 피감사 기업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인해 계속감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사품질이 저하한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박한순 외 2인(2013)은 감사노력의 측정치인 비정상 감사시간이 조세회피의 측정치인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비정상 차이와 음의 관련성을 갖는다는 연구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실증분석하였다. 비정상 감사시간에 대한 비정상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의 STLS 회귀분석 결과, 양의 조세회피 표본 및 비정상 차이가 0에 가까운 소폭의 음의 조세회피 표본에서 계수추정치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감사인이 양의 조세회피를 보이는 기업에 대하여 감사노력을 많이 투입할수록 조세회피가 감소한다는 연구가설이 지지되는 것으로 결론을 제시하였다.

박한순(2014)은 감사인이 감사노력을 많이 투입할수록 기업의 조세회피가 억제되고 적발되는 지의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유지하였다. 첫째, Desai와 Dharmapala(2006)의 측정모형을 확장하여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를 설명하는 변수로서 이익조정과 관련된 발생액 외에 납부세액을 추가하는 조세회피 측정모형을 제시하였다. 둘째, 감사노력과 조세회피의 관계 검증에서 납부세액으로부터 산출된 추정과세소득을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측정하고 분석한 결과가 실제과세소득을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측정하고 분석한 결과와 동일한지 여부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실제과세소득을 이용하는 경우 박한순 외 2인(2013)과 동일하게 양의 조세회피에서 감사노력의 계수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였다. 둘째, 납부세액으로부터 산출된 추정과세소득을 이용하는 경우 양의 조세회피에서 실제과세소득과 정반대로 감사노력의 계수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였다. 셋째, 두 과세소득의 조세회피 측정치 간 차이와 감사노력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도 감사노력의 계수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Desai와 Dharmapala(2006)의 측정모형을 사용한 선행연구와 달리 유가증권 공시규정 제7조를 위반하여 공시하는 기업의 세무조사 대상 연도를 기준으로 조세회피를 한 기업과 대응표본(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검증하는 것이며, 세무조사 후 추정세액이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추정세액의 크기가 감사투입시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III. 연구의 설계

1. 가설 설정

조세회피는 회계정보의 질 및 회계투명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이익조정과 마찬가지로 감사인의 감사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감사품질이 높다면 이익조정과 마찬가지로 조세회피도 감소할 것이므로 감사품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인 감사인 특성에 따라 조세회피정도가 다를 것이다(박미영 2012).

독립적인 감사인이 감사업무에 감사시간이나 감사노력을 많이 투입할수록 우수한 감사품질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인식, 평가, 배분 등의 회계선택을 포함한 기업의 조세회피가 발생가능한 상황에서, 독립적인 감사인이 감사노력을 많이 투입할수록 비정상적이거나 부적절

한 조세회피 또는 범규의 미비점을 이용한 조세회피 등이 억제되고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박한순 2014, 81). 박한순 외(2013)는 감사인이 양(+)의 조세회피를 보이는 기업에 대하여 감사노력을 많이 투입할수록 조세회피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보수적인 회계처리가 경영자의 이익조정과 유사한 맥락이라면 기업의 법인세 조정에 회계처리의 보수성이 이용될 것이며, 법인세비용이나 법인세부담액의 크기와 보수성의 크기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다(김정옥·배길수 2006). 즉, 경영자는 조세회피를 할 경우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세법을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적용할 뿐만 아니라 보수적으로 회계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우용상(2009)의 연구에서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보수주의 회계처리성향이 높은 기업이 조세회피측정치가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익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보수주의 회계처리를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시도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낮은 기업의 경우에는 보수주의 회계처리와 조세회피 간에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수익성에 따라 보수주의 회계처리를 이용한 조세회피시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 견지에서는 세무보고 공격성과 같은 조세회피행위로 인한 정보위험이 재무보고의 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들 회계 감사기업들에 대해서는 감사위험이 높다고 기대할 수 있고, 이런 경우 감사인의 실제 감사보수 결정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감사인이 인지하는 사전적인 기대감사시간 및 실제 감사투입시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박종일·지승민 2016). 이명곤 외 2인(2009)의 연구에서도 보수적 회계처리와 감사시간 간의 관계는 음(-)의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부감사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분식회계의 위험에 대해 감사위험을 높게 생각하지만 이익을 과소 계상한 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감사위험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감사투입시간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의 조세회피와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은 음(-)의 관계가 있다. 조세회피를 한 기업은 사후적으로 세무조사 시 탈루세액에 대해 추징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경영자는 조세회피를 할 때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수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세전이익을 과소계상 할 가능성이 높으며, 외부감사인은 회사가 보수적으로 회계처리를 할수록 감사위험이 낮다고 판단하여 감사투입시간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논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세무조사 대상이 된 연도의 조세회피기업과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은 기업 간에는 감사투입시간에 차이가 있다.

감사인은 감사대상회사의 감사위험이 증가하면 목표 감사위험을 낮추기 위해 감사투입시간을 늘리게 된다. 선행연구(이명곤 외 2012 ; 최정운 외 2014)에서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또는 감리지적 등이 감사대상회사의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을 증가시킴으로써 감사인이 감사위험을 높

게 평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았다. 감사위험을 높게 평가하게 되면 감사인은 추가적인 감사자원을 투입하여 감사절차를 강화하거나 입증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세무조사 결과 추정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의 감사위험을 높게 평가하여 감사투입시간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세무조사에 따른 추정세액의 크기는 감사투입시간과 관련성이 있다.

2. 연구 검증모형

가. <가설 1> 검증모형

세무조사 대상이 된 연도의 조세회피기업과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은 기업 간의 감사투입 시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모형은 다음 식(1)과 같다. 감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선행연구(권수영·기은선 2011; 김성환 외 2009)에서 사용하는 변수를 벤치마킹하고자 한다.¹⁾ 검증모형에서 기업을 나타내는 i 아래첨자는 편의상 생략한다. 본 연구는 유가증권 공시규정에 의해 자기자본의 5% 이상의 규모로 세금을 추정당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며, 특히 박한순 등(2013)의 Kis-Value를 이용한 비정상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와는 그 측정 방법이 다르다.

$$\begin{aligned} InAH_t = & \gamma_0 + \gamma_1 TA_t + \gamma_2 PTROA_t + \gamma_3 SIZE_t + \gamma_4 LOSS_t + \gamma_5 ISSUE_t \\ & + \gamma_6 OWNER_t + \gamma_7 FOR_t + \gamma_8 LEV_t + \gamma_9 INVREC_t + \gamma_{10} BIG_t + \epsilon_t \end{aligned} \quad (1)$$

여기서, $InAH_t$ = t 시점 감사시간의 자연로그값

TA_t = t 시점 조세회피를 한 기업의 세무조사대상 기간이면 1,

세무조사 대상기업이 아닌 통제기업이면 0

$PTROA_t$ = t 시점 세전투자수익률(세전이익/총자산)

$SIZE_t$ = t 시점 Ln (자산총계)

$LOSS_t$ = t 시점 당기순손실 기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ISSUE_t$ = t 시점 (사채발행금액 + 주식발행대금)/자산총계

$OWNER_t$ = t 시점 대주주지분율

1) 감사시간의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규모 변수($SIZE$), 피 감사회사의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는 투자수익률($PTROA$)과 결손여부 변수($LOSS$), 기업의 성장성을 대변할 수 있는 $ISSUE$ 변수, 소유구조($OWNER$)와 외국인지분율(FOR)을 내부통제의 변수로 사용한다. 부채비율(LEV)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나타내며, 감사업무 수행시 고위험과 난이도를 나타내는 $INVREC$ 변수와 감사인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BIG (대형법인) 변수를 벤치마킹하여 사용한다. 전년도 자산총액에 의해 당해 연도 감사시간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선행연구와 같이 시차(time lag)를 이용하지 않고 검증모형을 설정한다.

FOR_t = t 시점 외국인투자 지분율
 LEV_t = t 시점 (부채총계/자산총계)
 $INVREC_t$ = t 시점 (재고자산 + 매출채권)/자산총계
 BIG_t = t 시점 감사인이 대형회계법인(삼일, 삼정, 한영, 안진회계법인)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나. <가설 2> 검증모형

감사대상회사가 세무조사 결과 추정세액이 발생한 것을 감사인이 인지한 후 해당 회계연도의 감사투입시간에 변화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 식(2)와 같이 검증모형을 설정한다. 검증 모형에서 기업을 나타내는 i 아래첨자는 편의상 생략한다.

$$\begin{aligned}
 InAH_t = & \delta_0 + \delta_1 ATE_{j,t} + \gamma_2 PTROA_t + \delta_3 SIZE_t + \delta_4 LOSS_t + \delta_5 ISSUE_t \\
 & + \delta_6 OWNER_t + \delta_7 FOR_t + \delta_8 LEV_t + \delta_9 INVREC_t + \delta_{10} BIG_t + \epsilon_t
 \end{aligned} \quad (2)$$

여기서, $ATE_{j,t}$ = t 시점 j 방법으로 측정한 조세회피
 j 방법 : Ln (추징세액)와 “추징세액/신고세금”으로 측정함

3. 표본의 선정

표본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선정하였다.

- ① 유가증권시장(KOSPI)과 코스닥시장(KOSDAQ)에 상장된 기업으로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② 2011년도부터는 K-IFRS의 도입으로 감사환경이 이전과 달라져서 감사투입시간²⁾을 K-IFRS 도입 이전 기간과 비교할 수 없으므로 2011년도부터는 검증대상 기간에서 제외³⁾하여 검증대상 기간은 2001년부터 2010년으로 한다. 다만, 직전년도 재무자료가 필요하므로 표본기간은 2000년부터 2010년으로 한다.
- ③ 표본기업과 비교하기 위한 통제기업은 산업분류 내에서 자산총계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2 배수를 원칙으로 선정한다.⁴⁾
- ④ 세무조사 대상 기업 및 추정세액에 대한 정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의 자료를 수집하여 사용한다.⁵⁾

2) 감사투입시간은 한국회계학회에서 제공하는 감사시간 자료를 이용한다.

3) 정영기(2012)의 연구에 의하면 K-IFRS를 조기도입한 기업의 감사시간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4) 심충진 외 2인(2013. 90) 참조

5) 현행 유가증권 공시규정 제7조(주요경영사항, 2015.12.30 규정 제1276호) 제1항 제2호 라목에 다음과

- 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통제기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표 1>과 같이 표본기업을 선정한다. 다만,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776개 기업-년 표본 중, 세무조사를 받고 추정세액을 납부한 기업 107개 관측치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다.

〈표 1〉 표본의 선정

구 분	표본기업 수(기업-년)
① 감사시간 및 재무자료가 없는 기업 제외한 기업 수	776
② 통제기업 및 샘플기업을 1:2의 비율로 선정 한 후 기업 수	481
③ 산업 내 기업 수가 2개 이하인 기업이 및 통제기업이 없는 기업을 제외한 후의 기업 수	469

IV. 실증분석결과

1. 기술통계량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표 2>에 요약하였다.

<표 2>의 기술통계량을 보면 조세회피를 한 기업의 세무조사대상 기간이 3분의 1(대응표본을 2배수로 선정)이며, 세전투자수익률의 평균은 5.9%로 나타났다. 전체 표본의 14.5%가 당기순손실 기업이며, 대주주 지분율과 외국인투자 지분율의 평균은 각각 30.6%와 7.9%로 나타났다.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의 합이 자산총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7.6%를 나타내었으며, 전체 표본 중 대형회계법인의 피감사회사는 55.7%에 해당한다.

같이 사실이 발생할 때 해당 기업은 반드시 공시를 해야 한다.

해당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손익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을 때

- (1) 천재·지변·전시·사변·화재 등으로 인하여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재해(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가 발생한 때
- (2)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벌금·과태료·추징금 또는 과징금 등이 부과된 사실이 확인된 때
- (3) 이하 생략
- 6) 담배 제조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에 포함된 기업은 제외한다.

〈표 2〉 기술통계량(N=469)

변 수	평 균	표준편차	최솟값	중위수	최댓값
lnAH	6.470	0.914	4.159	6.492	8.527
TA	0.339	0.474	0.000	0.000	1.000
PTROA	0.059	0.090	-0.297	0.062	0.289
SIZE	26.016	1.480	23.356	25.919	30.000
LOSS	0.145	0.352	0.000	0.000	1.000
ISSUE	0.042	0.071	0.000	0.000	0.311
OWNER	0.306	0.203	0.000	0.304	0.855
FOR	0.079	0.133	0.000	0.010	0.613
LEV	0.491	0.193	0.085	0.496	0.974
INVREC	0.276	0.156	0.009	0.257	0.677
BIG	0.557	0.497	0.000	1.000	1.000

(주) 모든 변수는 이상치를 제거하기 위해 상하 5% 수준에서 winsorization한 값을 이용함

lnAH=감사시간의 자연로그 값, TA=조세회피를 한 기업의 세무조사대상 기간이면 1, 세무조사 대상기업이 아닌 통제기업이면 0, PTROA=세전투자수익률(세전이익/총자산), SIZE=Ln(자산총계), LOSS=당기순손실 기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ISSUE=(사채발행금액+주식발행대금)/자산총계, OWNER=대주주 지분율, FOR=외국인투자 지분율, LEV=(부채총계/자산총계), INVREC=(재고자산+매출채권)/자산총계, BIG=감사인인 대형 회계법인(삼일, 삼정, 한영, 안진회계법인)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2. 상관관계 분석결과

연구에서 사용되는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관심변수는 조세회피 여부(TA)이다. 상관분석에서는 조세회피 여부(TA)와 종속변수인 감사시간(lnAH)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다른 통제변수들은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5% 미만의 유의수준에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전투자수익률(PTROA), 기업규모(SIZE), 외국인투자 지분율(FOR), 부채비율(LEV)과 대형회계법인 감사 여부(BIG)은 감사시간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기순손실(LOSS), 성장성 변수(ISSUE), 대주주 지분율(OWNER)과 회계감사의 복잡성 변수(INVREC)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회피 여부(TA)와 다른 통제변수들 간에는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표 3〉 상관분석(N=469)

	lnAH	TA	PTROA	SIZE	LOSS	ISSUE	OWNER	FOR	LEV	INVREC	BIG
lnAH	1	-0.05 (0.325)	0.08 (0.082)	0.68 ($<.0001$)	-0.11 (0.013)	-0.10 (0.037)	-0.09 (0.042)	0.42 ($<.0001$)	0.15 (0.001)	-0.26 ($<.0001$)	0.36 ($<.0001$)
TA		1	0.07 (0.107)	0.02 (0.701)	-0.06 (0.162)	0.02 (0.616)	-0.03 (0.588)	0.12 (0.010)	0.02 (0.670)	0.01 (0.827)	-0.08 (0.096)
PTROA			1	0.10 (0.039)	-0.71 ($<.0001$)	-0.06 (0.211)	0.06 (0.232)	0.23 ($<.0001$)	-0.31 ($<.0001$)	0.10 (0.031)	0.12 (0.008)
SIZE				1	-0.14 (0.002)	-0.08 (0.087)	-0.01 (0.803)	0.48 ($<.0001$)	0.27 ($<.0001$)	-0.29 ($<.0001$)	0.28 ($<.0001$)
LOSS					1	0.07 (0.156)	-0.07 (0.153)	-0.13 (0.004)	0.18 ($<.0001$)	-0.06 (0.169)	-0.11 (0.020)
ISSUE						1	-0.04 (0.402)	-0.08 (0.077)	0.02 (0.645)	0.00 (0.997)	0.03 (0.577)
OWNER							1	-0.07 (0.118)	0.02 (0.732)	-0.01 (0.907)	0.02 (0.664)
FOR								1	-0.14 (0.002)	-0.21 ($<.0001$)	0.20 ($<.0001$)
LEV									1	-0.01 (0.864)	0.08 (0.069)
INVREC										1	-0.13 (0.003)
BIG											1

3. 연구모형 검증결과

가. 〈가설 1〉의 검증결과

조세회피(TA)를 독립변수로 하고, 감사시간(lnAH)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4>에 요약하였다. 통제변수의 예상부호를 예측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의 규모(SIZE)가 클수록 외부감사인인 감사해야 될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외국인 투자 지분을(FOR)과 부채비율(LEV)이 높을수록 감사위험이 증가되므로 투입되는 감사시간이 많아질 것이다. 대형회계법인(BIG)일수록 상대적으로 내부감리 등 회계법인 내에서의 통제가 강화되어 감사투입시간에 양(+)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당 예상부호를 (+)로 표시하였다. 세전투자수익률(PTROA)이 높을 경우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아 감사위험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예상부호를 (-)으로 하였다. 손실기업(LOSS)은 보수주의 관점에서 감사위험이 낮을 수 있고, 대주주지

분율(OWNER)이 높은 기업은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낮아 감사위험이 낮을 수 있기에 감사투입 시간과의 예상부호를 (-)으로 표시하였다. 그러나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INVREC)이 상대적으로 많을 경우 부도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예상부호를 (+)로 설정하였으나 검증결과는 유의성이 없었다. 사채발행이나 주식발행의 경우(ISSUE) 자본조달을 통해 계속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면 감사위험이 낮아지지만, 투자 수익의 불확실성이 높고 부채의 조달비용이 클 경우 감사위험이 높아져 감사투입시간이 증가할 것이다.

〈표 4〉 조세회피와 감사시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N=469)

$$\ln AH_t = \gamma_0 + \gamma_1 TA_t + \gamma_2 PTROA_t + \gamma_3 SIZE_t + \gamma_4 LOSS_t + \gamma_5 ISSUE_t + \gamma_6 OWNER_t + \gamma_7 FOR_t + \gamma_8 LEV_t + \gamma_9 INVREC_t + \gamma_{10} BIG_t + \epsilon_t$$

변 수	종속변수: ln(AH)				
	예상부호	추정계수	t값	Pr > t	VIF값
절편		-2.58***	-3.900	0.000	0.000
TA	(-)	-0.106*	-1.660	0.098	1.039
PTROA	(-)	-0.327	-0.660	0.511	2.290
SIZE	(+)	0.35***	13.350	<.0001	1.716
LOSS	(-)	-0.087	-0.720	0.471	2.077
ISSUE	(+, -)	-0.636	-1.510	0.131	1.019
OWNER	(-)	-0.393***	-2.680	0.008	1.016
FOR	(+)	0.711***	2.580	0.010	1.537
LEV	(+)	0.008	0.050	0.964	1.354
INVREC	(+)	-0.247	-1.220	0.224	1.150
BIG	(+)	0.323***	5.110	<.0001	1.129
F값	49.79(<.0001)				
수정R ² (%)	51.04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회귀분석 결과 관심변수인 조세회피(TA)의 회귀계수는 -0.106로 10%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세회피기업(세무조사 대상 연도)에 투입하는 감사시간이 대응표본(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은 기업)에 투입하는 감사시간보다 적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조세회피기업과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은 기업간의 감사투입시간에 차이가 있다는 <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 중의 하나는 검증표본과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대응표본은 세

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이지 실질적으로 조세회피를 전혀 하지 않은 기업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대응표본에 약간의 노이즈(noise)가 포함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결과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나타난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통제변수 중에는 기업규모(SIZE), 외국인투자 지분율(FOR), 대형회계법인 감사 여부(BIG)는 유의한 양(+)의 값을, 대주주 지분율(OWNER)은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규모가 크고, 외국인투자 지분율이 높고, 대형회계법인이 감사하는 기업일수록 감사투입시간이 많고,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감사투입시간이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모형의 수정된 R²는 51.04%로 설명력이 높은 편이며, VIF는 1.016~2.290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5>는 통제변수 중 세전투자수익률(PTROA)을 제외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세전투자수익률(PTROA)을 통제변수에서 제외하더라도 <표 4>의 결과와 달라지지 않았다. 모형의 적합도(수정된 R²)도 51.10%로 <표 4>의 모형과 거의 차이가 없다.

<표 5> 세전투자수익률(PTROA)을 제외한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N=469)

$$\ln AH_t = \gamma_0 + \gamma_1 TA_t + \gamma_2 SIZE_t + \gamma_3 LOSS_t + \gamma_4 ISSUE_t + \gamma_5 OWNER_t + \gamma_6 FOR_t + \gamma_7 LEV_t + \gamma_8 INVREC_t + \gamma_9 BIG_t + \epsilon_t$$

변 수	종속변수: ln(AH)				
	예상부호	추정계수	t값	Pr > t	VIF값
절편		-2.609***	-3.950	<.0001	0.000
TA	(-)	-0.107*	-1.690	0.092	1.038
SIZE	(+)	0.35***	13.360	<.0001	1.716
LOSS	(-)	-0.033	-0.370	0.708	1.122
ISSUE	(+, -)	-0.635	-1.510	0.132	1.019
OWNER	(-)	-0.397***	-2.710	0.007	1.015
FOR	(+)	0.682**	2.510	0.012	1.499
LEV	(+)	0.035	0.200	0.840	1.283
INVREC	(+)	-0.265	-1.320	0.189	1.131
BIG	(+)	0.319***	5.070	<.0001	1.123
F값	55.35(<.0001)				
수정R ² (%)	51.10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나. <가설 2>의 검증결과

감사대상회사가 세무조사 결과 추정세액이 발생한 것을 감사인이 인지한 후 해당 회계연도의 감사투입시간에 변화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추정세액의 크기(ATE)를 독립변수로 하고, 감사시간($lnAH$)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6>에 요약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관심변수인 추정세액의 크기(ATE)와 감사시간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⁷⁾ 통제변수 중에는 기업규모($SIZE$)와 대형회계법인 감사 여부(BIG)는 유의한 양(+)의 값을, 당기순손실 여부($LOSS$)는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규모가 크고, 대형회계법인이 감사하는 기업일수록 감사투입시간이 많고,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업일수록 감사투입시간이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6> 추정세액의 규모와 감사투입 시간의 관계에 대한 검증결과(N=107)

$$\begin{aligned} lnAH_t = & \delta_0 + \delta_1 ATE_t + \gamma_2 PTROA_t + \delta_3 SIZE_t + \delta_4 LOSS_t + \delta_5 ISSUE_t \\ & + \delta_6 OWNER_t + \delta_7 FOR_t + \delta_8 LEV_t + \delta_9 INVREC_t + \delta_{10} BIG_t + \epsilon_t \end{aligned}$$

변 수	종속변수: ln(AH)				
	예상부호	추정계수	t값	Pr > t	VIF값
절편		-2.412*	-1.760	0.081	0.000
ATE(LN추정세액)	(+)	0.065	0.680	0.498	4.517
PTROA	(-)	-0.416	-0.480	0.634	2.409
SIZE	(+)	0.286***	3.250	0.002	5.247
LOSS	(-)	-0.423*	-1.830	0.071	2.172
ISSUE	(+, -)	0.906	0.810	0.419	1.350
OWNER	(-)	-0.283	-0.830	0.410	1.137
FOR	(+)	0.108	0.210	0.833	1.822
LEV	(+)	0.262	0.630	0.528	1.428
INVREC	(+)	-0.619	-1.450	0.150	1.185
BIG	(+)	0.692***	4.910	<0001	1.314
F값	17.68(<.0001)				
Adj R ² (%)	61.14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 7) 한편 추정세액과 감사투입시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를 증분변수(=당기 감사투입시간-전기 감사투입시간)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역시 추정세액의 크기가 감사시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동현과 최정운(2013)의 연구에서 불성실공시지정기업의 실제 지정연도를 기준으로 한 검증결과에서 불성실공시 여부가 비정상감사보수와는 유의성이 있었지만 불성실공시 여부가 비정상감사시간과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것이다. 즉, 법인세비용의 불성실공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세무조사 추정세액도 감사투입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조세부담의 과소계상이 기업회계기준의 위배에 근거한 것이 대부분이라면 추정세액은 외부감사인에게 감사위험으로 느껴져 추정세액이 발생될 때 외부감사인은 감사투입시간을 증가시킬 것이다. 현재 세무조사 자료와 추정세액의 근거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추정세액의 발생이 감사시간이나 감사위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추정세액은 기업회계기준의 위배보다는 세법의 적용 및 해석의 문제로 유추될 수 있다.

추정세액이 크면 감사위험이 높아져 외부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구결과는 유의성은 없지만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이유 중의 하나는 연구기간을 추정세액이 공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검증하였기에 회사가 추정세액 공시시점에 감사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추정세액의 크기가 감사위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 추정세액의 비율과 감사투입 시간의 관계에 대한 검증결과(N=98)

$$\ln AH_t = \delta_0 + \delta_1 ATE_t + \gamma_2 PTROA_t + \delta_3 SIZE_t + \delta_4 LOSS_t + \delta_5 ISSUE_t + \delta_6 OWNER_t + \delta_7 FOR_t + \delta_8 LEV_t + \delta_9 INVREC_t + \delta_{10} BIG_t + \epsilon_t$$

변 수	종속변수: Ln(AH)				
	예상부호	추정계수	t값	Pr > t	VIF값
절편		-2.112	-1.410	0.162	0.000
ATE(추정세액/신고금액)	(+)	0.006	1.210	0.231	1.200
PTROA	(-)	0.434	0.370	0.712	1.798
SIZE	(+)	0.321***	5.550	<.0001	2.070
LOSS	(-)	-0.224	-0.940	0.347	1.647
ISSUE	(+, -)	0.265	0.190	0.850	1.179
OWNER	(-)	-0.432	-1.230	0.221	1.122
FOR	(+)	0.340	0.650	0.519	1.922
LEV	(+)	0.632	1.430	0.157	1.402
INVREC	(+)	-0.563	-1.260	0.210	1.231
BIG	(+)	0.609***	4.330	<.0001	1.233
F값	16.68(<.0001)				
Adj R ² (%)	62%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또 다른 관점은 회사가 조세회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가 보수적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쳐 외부감사인인 보수주의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위험을 과소평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추징세액의 비율(추징세액/신고금액)을 독립변수로 하고, 감사시간($LnAH$)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으나, 관심변수인 추징세액 비율(ATE)도 감사투입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강건성 검증

감사대상회사가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이 발생한 것을 감사인이 인지한 다음 회계연도의 감사투입시간에 변화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추징세액 규모와 다음 회계연도 감사투입 시간의 관계에 대한 검증결과(N=105)

$$LnAH_t = \delta_0 + \delta_1 ATE_{t-1} + \gamma_2 PTROA_t + \delta_3 SIZE_t + \delta_4 LOSS_t + \delta_5 ISSUE_t + \delta_6 OWNER_t + \delta_7 FOR_t + \delta_8 LEV_t + \delta_9 INVREC_t + \delta_{10} BIG_t + \epsilon_t$$

변 수	종속변수: Ln(AH)			
	예상부호	추정계수	t값	Pr > t
절편		-2.955**	-2.300	0.023
ATE : Lag(Ln추징세액)	(+)	0.017	0.220	0.828
PTROA	(-)	1.426	1.640	0.104
SIZE	(+)	0.35***	4.610	<.0001
LOSS	(-)	0.226	1.060	0.291
ISSUE	(+, -)	-1.675*	-1.840	0.068
OWNER	(-)	-0.269	-0.880	0.379
FOR	(+)	-0.499	-1.220	0.224
LEV	(+)	-0.193	-0.550	0.582
INVREC	(+)	-0.323	-0.810	0.419
BIG	(+)	0.699***	5.830	<.0001
F값	19.63(<.0001)			
Adj R ² (%)	64.17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추징세액의 크기(추징세액/신고금액)가 세액 추징이 결정된 다음 회계연도의 감사시간($LnAH$)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가로 분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세회피와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세무조사 결과 추정되는 세액의 크기가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는데 있다. 먼저 조세회피와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조세회피(TA)를 독립변수로 하고, 감사시간($InAH$)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해 대응표본을 설정하였으며, 표본기업과 비교하기 위한 통제기업은 산업분류 내에서 자산총계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2배수로 선정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관심변수인 조세회피(TA)의 회귀계수는 -0.106 로 10%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세회피기업(세무조사 대상 연도)에 투입하는 감사시간이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은 기업에 투입하는 감사시간보다 적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조세회피기업과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은 기업간의 감사투입시간에 차이가 있다는 <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세무조사 결과 추정되는 세액의 크기가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추정세액의 크기 또는 추정세액의 비율(ATE)를 독립변수로 하고, 감사시간($InAH$)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관심변수인 추정세액의 크기, 추정세액의 비율(ATE)과 감사시간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동현과 최정운(2013)의 연구에서 불성실공시지정기업의 실제 지정연도를 기준으로 한 검증결과에서 불성실공시 여부가 비정상감사보수와는 유의성이 있었지만 불성실공시 여부가 비정상감사시간과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것이다. 즉, 법인세비용의 불성실공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세무조사 추정세액도 감사투입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이유 중의 하나는 연구기간을 추정세액이 공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검증하였기에 회사가 추정세액 공시시점에 감사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추정세액의 크기가 감사위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관점은 회사가 조세회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가 보수적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쳐 외부감사인이 보수주의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위험을 과소평가한 결과라고 본다.

외부감사인이 조세회피를 한 기업에 대해 회사가 보수적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감사투입시간을 상대적으로 덜 투입한다면 감사위험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외부감사인은 조세회피를 한 기업에 대해 보수적 회계처리를 한 결과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회계처리와 관계없이 단순히 탈세 등 조세를 회피한 결과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한 후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조세회피를 통한 세전이익의 하락이 보수주의 회계처리로 감사인에게 잘못 인식되어 감사투입시간이 과다하게 감소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고윤성 · 기은선. 2014. “최고경영자 교체와 조세회피”. 경영학연구 제43권 제4호 : 1169-1196.
- 고종권 · 윤성수. 2006. “재무보고이익-세무보고이익의 차이와 이익, 현금흐름 및 발생액의 자본시장의 반응”. 회계학연구 제31권 제1호 : 127-162.
- 권수영 · 기은선. 2011. “발생액의 질이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36권 제4호 : 95-137.
- 김성환 · 하미혜 · 이호영. 2009. “감사시간의 보고행태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34권 제1호 : 241-273.
- 김정옥 · 배길수. 2006. “보수적 회계처리와 조세적 유인”. 세무학연구 제23권 제1호 : 79-103.
- 김진희 · 정재욱. 2006.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23권 제4호 : 97-123.
- 박미영. 2012. “감사인 특성과 조세회피”. 세무와회계저널 제13권 제3호 : 191-219.
- 박종일 · 지승민. 2016. “세무보고 공격성이 감사인이 인지한 기대감사시간, 실제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제25권 제2호 : 389-434.
- 박한순. 2014. “과세소득의 측정 및 감사노력과 조세회피의 관계”. 회계연구 제19권 제5호 : 73-102.
- 박한순 · 이종필 · 정균채. 2013. “감사노력과 기업의 조세회피”. 회계연구 제18권 제1호 : 227-249.
- 신현걸 · 정수진. 2016. “외부감사실시내용의 공시 실태 분석 - 감사시간을 중심으로 -”. 세무와회계저널 제17권 제2호 : 223-253.
- 심충진 · 이준규 · 김진태. 2013. “세무조사 여부에 따른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제31권 제4호 : 81-104.
- 이동현 · 최정운. 2013. “불성실공시 지정기업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회계 · 세무와 감사연구 제55권 제1호(통권 제57호, 2013년 6월) : 61-81.
- 이명곤 · 이세철 · 장석진. 2009. “회계처리의 보수성 :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와의 관련성”.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지 22(4) : 1961-1989.
- 이명곤 · 장석진 · 박희진. 2012. “불성실공시가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제21권 제6호 : 1-30.
- 이창섭 · 최우석 · 배성호. 2012. “실제이익조정활동과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 경영학연구 제41권 제4호 : 757-787.
- 임동원 · 오 윤. 2013. “조세포탈과 조세회피의 개념 구분”. 세무학연구 제30권 제3호 : 161-188.
- 정영기. 2012. “국제회계기준 조기적용기업의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제41집 : 293-322.

- 최정운 · 이재은 · 배길수. 2014 “감리지적기업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 감리조치 전후 기간 및 사유별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39권 제1호 : 217-252.
- 최현섭. 2012. “조세회피와 재무-세무보고이익 차이에 관한 실증연구”. 국제회계연구 제45집 : 195-218.
- Desai, M. and D. Dharmapala. 2006. Corporate Tax Avoidance and High powered Incentiv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9 : 145-179.

Investigation between Correlation of Tax Avoidance and Audit Hours

Chung-Jin Shim* · Jae-Yeon Jeong***

—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s two hypotheses — first, whether tax avoidance is related to audit hours and second, whether the additional tax penalty amounts are correlated to audit hours. We compared a sample of firms that were tax audited and not tax audited and constructed a data set with a one-to-two correspondence between the sample firms and control firms. We selected control firms and sample firms that are similar in asset size and sales.

Study results indicate that the overall audit hours of firms caught breaking tax laws are significantly lower than audit hours of firms that kept tax laws. The coefficient of tax avoidance is significantly ($p < 0.10$) negative (-0.106 , $t = -1.66$). From these results, perhaps most interestingly, firms identified as practicing tax avoidance frequently tend to recognize economic transactions with conservative accounting to decrease their tax burden.

We also examined the results of national tax service audits to identify whether the assessed corporate tax penalties are related to audit hours of firms. Results indicate that the size or the rates(assessed penalty amount/total tax before audit) of assessed penalty amounts are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amount of audit hours.

Our study makes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audit planning. In many instances of low tax earnings, the audit plan may assume conservative accounting practices and allocate minimal time, however, in some cases, low tax earnings may also be correlated with tax avoidance, in which case longer allotment of time is needed for the audit.

<Key words> tax avoidance, tax audit, assessed amount, audit hours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Konkuk University, chjshim@konkuk.ac.kr, First Author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jyjung@kangwon.ac.kr, Corresponding Author